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1998. 12. 22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13차 위원회('98.12.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렬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m)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정	중로	1류	20	1,700	집산도로	합정동416-33	성산동279-1	일반도로	
변경	대로	2류	33~ 35	1,700	보조간선 도로	합정동416-33	성산동279-1	일반도로	

○ 도시계획 입안사유

- 월드컵 주경기장의 상암지역 유치에 따라 주변가로망의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가양대교 북단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경유 성산1교간 도로가 폭50m~35m (6차로)로 계획되어 4차로인 합정로와 연결되므로 차선수의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망의 불균형이 예상되어 합정로의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종축 간선도로의 체계에 비해 횡축간선도로의 체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본 합정로는 도시계획계획상 우리구 관내를 횡단하여 용산구까지 연결되는 제3횡축도로로 우리구 교통체계 및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도로기능의 향상을 위한 도로확장이 필요하므로 대로2류(33m~35m)로 확장계획을 입안함.

○ 사업개요 및 현황

- 위 치 : 합정동 416-33호 ~ 성산동 279-1호간
- 규 모 : 폭 20m → 33m ~ 35m, 연장 1,700m
- 도시계획 현황 : 일반주거지역
- 이해관계인 현황
 - 토 지 : 144필지 24,200㎡ (사유지 119필지 21,100㎡)
 - 건 물 : 110동 43,050㎡
 - 영 업 : 393개 집포
- 소요예산 : 94,270백만원
 - 보상비 : 83,220백만원
 - 공사비 : 10,400백만원
 - 설계용역 및 감리비 : 650백만원

○ 추진경위

- '98.9.16 : 월드컵경기장 건설관련 도시교통정책심의
소위원회(2차)결과 합정로 확장 필요성 대두
- '98.10.8 : 월드컵관련 접근 도로망 확충 및 정비계획
방침사항 통보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 구)
- '98.10.12 ~ '98.11.13 : 합정로 확장(안) 계획
- '98.11.19 : 기술자문회의 개최
 - 결과 : 참석자 25인중 23인이 구 계획안 추천
- '98.11.27 : 주민설명회 개최
 - 결과 : 의견제출자(참석인원 약200명) 25명중 16명
이 구청안 지지
- '98.12. 2 : 합정로 확장 방안 확정
- '98.12. 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1998-396호)
 - 신문공고 : 조선일보, 세계일보
 - 공람기간 : '98.12.9 ~ '98.12.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본 건은 합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합정동 로타리에서 성산1교간 합정로는 1936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되어 성산·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중인
1960년~1973년에 폭 20m 4차로, 연장 1700m로 정비된 도로임.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가로망 확충계획에 의거 가양대교 북단에서 주경기장을 경유 성산로와 연결된 주도로는 폭 35~50m 6차로로, 4차로인 합정로와 연결되어 차선수의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망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98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월드컵 행사 대비 접근 도로망 확충과 관련, 도시교통 정책 소위원회에서 합정로 확장 필요성이 검토되었음.
 - 마포구에서는 가양대교 북단과 연결된 도로선형과의 일치여부, 불합리한 합정교차로 개선 가능여부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로선형이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본 안(합정R 기준 우측 - 성산동, 서교동측)을 확장 계획으로 입안하였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6호선 지하 출입구와 환기구 등 시설물은 당초 20m 도로폭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별도 검토(도시계획시설 변경) 하여 예정된 공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요망됨.
 - 합정로는 마포구 중심지인 합정지역과 성산지구를 연결한 가로이고,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 6호선중 3개역사(합정, 망원, 마포구청역)가 설치되어 향후 역세권 형성으로 어느지역 보다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임.
- 또한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동지역을 주변 지원시설 배후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적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합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보면, 합정로 확장 주민대책위원회 천장웅외 30인과 합정로 확장 세입자대책위원회 유남훈외 165인 그리고 기타 5인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의견내용은 강변도로와 신설도로 및 일방통행 등을 활용(확장 계획 반대)하거나 토지·건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등을 요구하고 있음.

합정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하여 지난 4년간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 왔는바, 향후 사업 및 보상계획 수립시 토지·건물 및 영업보상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주민들의 의견은?
- 답변요지(김종열 도시개발과장) :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단지 보상차원에서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함.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도로폭이 33m~35m인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 답변요지(김종열 도시개발과장) : 확장도로 전구간이 33m이고 성산로와 접하는 부분만 35m임.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도로로 잘리고 남은 2~3m 자투리땅은 확대보상이 되는지?
- 답변요지(김종열 도시개발과장) : 가능함.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포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은?
- 답변요지(김종열 도시개발과장) : 세무서에 소득신고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이 가능함.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반대의견은 전체의 몇% 인지?
- 답변요지(정만근 토목과장) : 건물주 반대는 5~6명에 불과하고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반대함.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재결까지 감안해서 월드컵전에 공사가 가능한지?
- 답변요지(정만근 토목과장) : 2000년 3월까지 공탁까지 가능하여 공사 추진이 가능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총 점포수는 393개이고 반대가 170명 약50%가 반대서명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며 주민 설명회는 하였는지?
- 답변요지(정만근 토목과장) : 주민설명회는 한번 하였고, 감정평가사에게 최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설명을 할것이며, 구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움.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지하철 6호선공사로 4~5년 정신적, 사업적,육체적 피해를 보아 왔는데 보상대책은?
- 답변요지(정만근 토목과장) :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더 발전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정신적 보상까지 하여야 하나 현재 실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현시가보상에서 적정한 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의 견

-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주변도로망 확충 등 교통계획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합정로의 확장은 도시 계획 변경결정 조서와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본 도시계획(안)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하여 지난 4년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교통과 피해를 받아 왔는바, 향후 사업 및 보상계획 수립시 토지, 건물 및 영업보상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 1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명 : 합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 도시계획법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정	중로	1류	20	1,700	집산도로	합정동416-33	성산동279-1	일반도로	
변경	대로	2류	33~35	1,700	보조간선도로	합정동416-33	성산동279-1	일반도로	

4. 도시계획 입안사유

가. 월드컵 주경기장의 상암지역 유치에 따라 주변가로망의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가양대교 북단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경유 성산1교간 도로가 폭50m~35m(6차로)로 계획되어 4차로인 합정로와 연결되므로 차선수의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망의 불균형이 예상되어 합정로의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나.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종축 간선도로의 체계에 비해 횡축간선도로의 체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본 합정로는 도시기본계획상 우리구 관내를 횡단하여 용산구까지 연결되는 제3횡축도로로 우리구 교통체계 및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도로기능의 향상을 위한 도로확장이 필요하므로 대로2류(33m~35m)로 확장계획을 입안함 .

5. 사업개요 및 현황

- 위치 : 합정동 416-33호 ~ 성산동 279-1호간
- 규모 : 폭 20m → 33m ~ 35m, 연장 1,700m
- 도시계획 현황 : 일반주거지역
- 이해관계인 현황
 - 토지 : 144필지 24,200㎡ (사유지 119필지 21,100㎡)
 - 건물 : 110동 43,050㎡
 - 영업 : 393개 점포
- 소요예산 : 94,270백만원
 - 보상비 : 83,220백만원
 - 공사비 : 10,400백만원
 - 설계 용역 및 감리비 : 650백만원

6. 추진경위

- '98. 9. 16 : 월드컵경기장 건설관련 도시교통정책심의 소위원회(2차) 결과 합정로 확장 필요성 대두
- '98. 10. 8 : 월드컵관련 접근 도로망 확충 및 정비계획 방침사항 통보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 구)
- '98. 10. 12 ~ '98. 11. 13 : 합정로 확장(안) 계획
- '98. 11. 19 : 기술자문회의 개최
 - 결과 : 참석장 25인중 23인이 구 계획안 추천
- '98. 11. 27 : 주민설명회 개최
 - 결과 : 의견제출자(참석인원 약200명) 25명중 16인이 구청안 지지
- '98. 12. 2 : 합정로 확장 방안 확정
- '98. 12. 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 공고 제1998-396호)
 - 신문공고 : 조선일보, 세계일보
 - 공람기간 : '98. 12. 9 ~ '98. 12. 22

첨 부 : 위치도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도면 (1/3,000) 1부. 끝.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합정동 416-33호 ~ 성산동 279-1호간)

